[서식 예] 양수금청구의 소(대여금채권의 양수)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양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소외 ◈
◈◈가 위 채무를 갚을 날짜가 되어도 갚지 못하였으므로, 그 일부라도 지급
받기 위하여 소외 ◈◈◈부터 소외 ◈◈◈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10,000,000원의 대여금청구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리고 소외 ◈◈◈는 20○○. ○. ○. 피고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양수사실을 확
정일자 있는 증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그 다음날 피
고에게 도달되었습니다.

- 2. 그 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수금을 신속히 지급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형** 나 피고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기만 할 뿐 지급할 의사들 이지 않고 있습니다.
-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양수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양도통 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차용증서

1. 갑 제2호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갑 제3호증 채권양도양수통지서

1. 갑 제4호증 우편물배달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T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기 타	 인지액:○○○원(107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원(107억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남기준표)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채건양도는 구 제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진자료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발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관결).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체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송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순 없다(민법 제450조).여기서 '확정일사'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판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받이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중서에 의하여 이루어집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중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대법원 2010. 5.13. 선고 2010다8310 관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을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것이지 채무변제에 같음하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만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법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다'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집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그 양수한 채권의 변제까지 이루어져야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이 경우 대체급부로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당시 양도대상인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약점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자의 변제자려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관결). 이자체권은 원본체권에 대하여 중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체권은 원본체권에 당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체권은 원본체권에 대하여 중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체권은 원본체권의 상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체권은 원본체권의 양도되지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체권의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체권은 원본체권의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장체권은 원론체권의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라체권은 원본체권의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라체권은 원본체권의 양도당나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음(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C) 대한법률구조공단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라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